



# 대화 녹음... 어디까지 합법적인가



김낙의  
법산 법률사무소 변호사

휴대폰의 녹음 기능 발달로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 전화통화 또는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. 소송에서의 증거를 준비하기 위해 또는 상대방이 혹시 과거에 한 발언을 반복하지 않을까하는 노심초사에서 휴대폰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쉽게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.

따라서 요즘 적대적 또는 비우호적인 사람과의 대화시 녹음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조심스럽게 대화에 임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이러한 대화의 녹음은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비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차원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. 그렇다면 대화의 녹음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 것일까...

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와 그 지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.(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, 제16조 제1항)

우선 2인의 대화 도중 대화에 참여한 일방 당사자

가 상대방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어 불법 감청이 아니다. 그러나 대화의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의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함은 당연하다.

대화의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2인의 대화 당사자 중 1인의 동의만을 얻어 대화를 녹음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1인의 동의가 없던 이상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.

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이나 청취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이 없어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.

동의 없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누설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평소 휴대폰의 편리한 기능에만 의존하고 간과하기 쉬운 위와 같은 법률 상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.